

작성: 조우성 선임연구원(cho.woo.sung@ydi.or.kr)

1. 지금도 교실은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

○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초·중·고등학교

- 학교마다 규정은 천차만별이지만 교칙에 따라 오전 조회 전에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종례 후에 되돌려받도록 경우가 많음
- 이러한 수거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
 - 수업방해로 인한 수업권 침해·학습권 침해
 - 스마트폰 분실 사고 및 변상 문제, 최신 기종 소유 욕구에 따른 갈등 및 위화감
 - 음란물, 사이버 폭력, 교권침해 등 교육적 부작용
 - 무분별한 사진촬영 및 배포로 인한 초상권 침해

○ ‘기본권’ 주장하는 학생의 손을 들어 준 국가인권위원회

- 일부 학생은 “학교 일과시간 스마트폰 사용금지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”며 국가인권위에 진정
- 국가인권위원회에 2016년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대한 진정이 약 45건 접수
- 국가인권위원회는 ‘전면금지는 인권침해’라는 것이 일관된 판단
 - 국가인권위원회 “학교가 희망자에 한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,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”

2.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중독

○ 과기부 “2020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(35.8%)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”

- 2019년 10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.2%였는데 2020년 5.6포인트 증가하여 35.8% 기록

※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: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 신체·심리·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지칭 (일명 ‘스마트폰 중독’)

-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이 39.6%로 가장 취약했고 고등학생은 35.0%, 초등학생은 30.5%로 조사

[그림]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

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0~19세 기준

	과의존 위험군	고위험군	잠재적 위험군		과의존 위험군	고위험군	잠재적 위험군
2016년	30.6%	3.5%	27.1%	남자	35.0%	5.0%	30.0%
2017년	30.3%	3.6%	26.7%	여자	36.5%	4.9%	31.6%
2018년	29.3%	3.6%	25.7%	초	30.5%	4.3%	26.2%
2019년	30.2%	3.8%	26.4%	중	39.6%	5.8%	33.8%
2020년	35.8%	5.0%	30.8%	고	35.0%	5.3%	29.7%

※스마트폰 과의존: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,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자료=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
출처: 조선일보 (21.5.25)

○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

- 전문가들은 ‘스마트폰 중독’ 증상이 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. 증상이 심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로 이어질 수 있음
 -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“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뇌의 전두엽이 덜 성숙해 성인이 돼서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”
- 빌게이츠, 스티브 잡스, 순다 피차이, 사티아 나델라 등 IT 거물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엄격히 제한함
 - 빌게이츠 "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식탁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취침 전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했다"

3. 교내 스마트폰 사용제한은 세계적인 추세

○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선공약 ‘교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금지’

- 2018년 프랑스 하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·의존 현상을 줄이기 위해 3~15세 학생이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전자기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

- 다만 교과 외 활동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둬
-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장관 “우리의 주된 역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고, 이 법으로 이 같은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뤘다”

○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

- 영국 : "모든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" 추진 (2021.6 발표)
- 일본 : 초중등생 휴대전화 소지 등교 금지(2009년)
- 중국 : 초중등생 휴대전화 소지 등교 금지(2021년)
- 미국 : 캘리포니아주 ‘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 허용’ 법안 제정(2020년)
- 캐나다 : 온타리오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(2019년)

4. 시사점

○ 학생들이 자율적 규제를 악용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음

-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는 자율적 규제가 합리적이지만 자율적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규정 준수 의지가 없다면 규정 집행과정에서 마찰만 있을 뿐 학생들의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 문화 형성에는 도움 안됨.

○ ‘초·중등학교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제한’ 검토 필요

- 스마트폰 사용의 자율적 관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초·중등학생의 사용제한은 프랑스, 영국, 일본, 중국 등이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안
-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학생·학부모·교원 주체들의 합의에 따른 사용 규범 제정 및 시행

○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(2018년 서울시의회)

- 시민 77%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찬성(학생은 반대 72.6%)